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1.9.16.(목) 조간	배포
담당부서	금융투자검사국	오상완 부국장(3145-7012), 김은아 선임(3145-7014)	

**제 목 : 신기술조합 투자(출자)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
 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및 행정지도 예고**

1. 소비자경보

■ 소비자경보 2021-13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에 투자(출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기술조합 투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나, 그에 비해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하므로, 투자시 아래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하여, 투자 성공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을 알 필요
 - ②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
 - ③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명자료를 요구할 필요
 - ④ 투자판단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설명 및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 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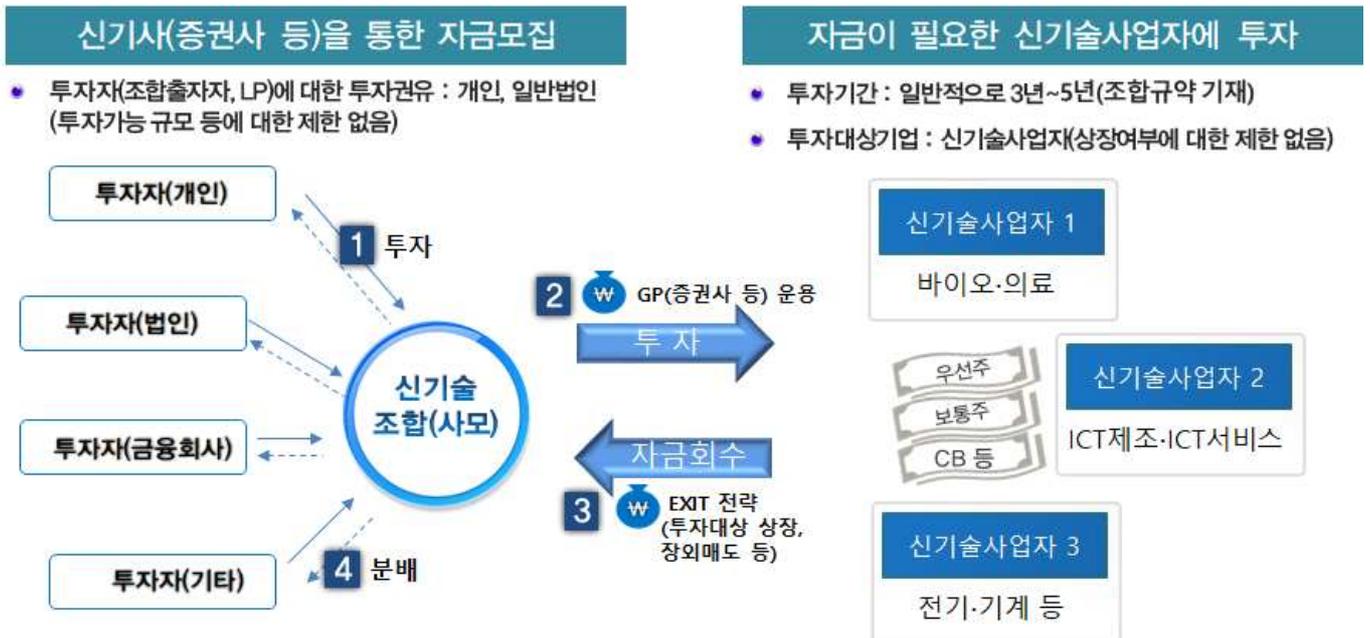
2. 행정지도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I 추진 배경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도입('84년)되었으며,
 - '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경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 * 약정금액(조합수) : '18말 7.2조원(459개) → '19말 10.3조원(751개) → '20말 11.7조원(997개)
-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고위험 투자에 해당됨에도 일부 증권사는 투자 권유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여
 -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의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기술조합의 모집·운영·분배 흐름



< 금융용어 설명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증권사 등)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조합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
- **무한책임사원(GP)**: 조합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신기술조합의 경우 증권사 등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또는 동사가 위탁한 공동GP)가 이에 해당
- **유한책임사원(LP)**: 조합 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신기술조합에 출자한 투자자가 이에 해당

II 개인투자자 모집현황

- (신기술조합 설정·모집) '21.3월말 121개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신기술조합(사모)을 통해 총 2.3조원(약정금액 기준 2.7조원)을 모집하였으며,
 - 증권사 단독으로 GP(무한책임사원)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타사와 공동으로 GP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기술사업금융 영업은 통상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집방식과 투자대상이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 (개인조합원 모집)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LP, 3,327명) 중 개인투자자(2,521명)가 75.8%를 차지(출자금액 기준으로는 4,295억원, 18.7%)하며,
 -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2,437명)로, '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하여 급증*하고 있습니다.

* '18말 366명 → '19말 792명 → '20말 2,039명 → '21.3말 2,521명

※ 증권사가 지점 등 리테일 조직망을 활용한 조합원 모집 확대시 개인투자자 유입이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사모 신기술조합 vs. 사모펀드 비교

구분	사모 신기술조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근거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운용주체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조합의 GP)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투자대상	금융업, 부동산업, 사행산업을 제외하고 투자 가능	제한없음
출자(투자)자 자격	제한없음	전문투자자, 적격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
금소법 적용여부	X	○

Ⅲ 문제점

- (제도적 측면)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설명 의무 등) 마련·이행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 * 여전법에 따라 사모방식으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 배제(제5조)
- (업무영위 측면) 최근 개인투자자*(2,521명)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 * 개인투자자 평균 투자금액(모집금액)이 1억원 미만인 조합은 69개(전체 252개)
 -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 등만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조합 투자시 유의할만한 사례

- (사례1) ○○증권은 조합명을 “■■■펀드” 로 기재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음
 - (유의사항 1) 신기술조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2) ●●증권에서 모집한 ■■■투자조합은 투자대상회사가 사업실패(의약품의 미승인)로 인해 부실화되면서 회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이 진행되고 있음
 - (유의사항 2) 신기술조합은 투자기업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시 원금 전액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투자구조 및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사례3) ◇◇증권에서 모집한 ▨▨투자조합은 투자대상기업이 만든 IR자료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보수 관련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
 - (유의사항 3) 신기술조합의 보수(예 : 관리보수 연 2%, 성과보수는 기준수익을 초과분의 20%)는 일반 펀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대응 방안

- (소비자경보 발령)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하여 투자하거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하게 되는 등,
 -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신기술조합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비자 당부사항 >

- ①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하여, 투자 성공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을 알 필요
- ②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
- ③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명자료를 요구할 필요
- ④ 투자판단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설명 및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 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

-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함으로써

* 공모방식으로 투자자(출자자, LP)를 모집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

** 행정지도는 9.16.에서 10.8.까지(23일간) 의견 청취*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법규정보 > 금융행정지도 > 행정지도 예고

-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별첨〉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안)

I. 행정지도의 취지

- 증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영위와 관련, 투자자에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금소법상 판매절차를 마련·적용토록 지도하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관행의 조속한 정착 유도

II. 행정지도의 내용

◇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금소법 제4장)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

* 금소법(§5)에서는 증권사가 신기술조합(사모) 출자 권유시 동법 적용을 배제

- ① (판매규제 준용)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금융투자상품(사모펀드)의 판매에 준하여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적용하도록 권고

* 금소법 제4장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13~§28)

- ② (내부통제기준 마련) 권유업무 담당 임직원(공동 GP의 임직원 포함)이 판매규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행여부 점검 기준 등을 마련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이후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신규 판매(출자권유)시부터

III. 행정지도의 시행일 및 존속기한

- (시행일) 공고한 날부터 시행

※ 9.16.에서 10.8.까지(23일간) 의견 청취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존속기간) 공고한 날부터 1년간 유효